

## 特許廳職制<II>

### 一 承 前一

제8조 (審查1局) ① 심사 1국장 밑에 상표심사담당관·의장심사담당관 각 2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 1국은 상표 및 의장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 (審查2局) ① 심사 2국장 밑에 기계심사담당관 2인과 금속심사담당관·전기심사담당관 전자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공업기감·광무기감·통신기감·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기계심사담당관은 기계기정으로 금속심사담당관은 금속기정 또는 체광기정으로, 전기심사담당관과 전자심사담당관은 전기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보한다.

③ 심사 2국은 기계·금속·전기·전자 및 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0조 (審查3局) ① 심사 3국장 밑에 유기화학심사담당관 및 약품화학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공업기감·약무기감·공업부기감 또는 약무부기감으로, 유기화학심사담당관과 무기화학심사담당관은 화공기정으로, 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약무기정으로 보한다.

③ 심사 3국은 화학·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1조 (審查4局) ① 심사 4국장 밑에 농수산심사담당관·잡화심사담당관·섬유심사담당관 및 토건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기감·농립기감·수산기감·시설기감·부이사관·농업부기감·농립부기감·수산부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농수산심사담당관은 조선기정·농립기정 또는 수산기정으로, 잡화심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섬유기정으로, 섬유심사담당관으로 토건심사담당관은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③ 심사 4국은 농수산·조선·잡화·섬유·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 (審判所) ①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판소를 둔다.

② 심판소에 심판관과 행정 1과를 둔다.

③ 심판소장은 이사관·공업기감·광무기감·약무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약무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심판관은 서기판·기계기정·전기기정·섬유기정·화공기정·조선기정·금속기정·체광기정·농립기정·약무기정·수산기정·토목기정·건축기정·또는 통신기정으로, 행정 1과장은 서기판으로 보한다.

④ 행정 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류 및 물건의 수발·편찬·보존과 공시송달

2. 심판대장의 정리 및 보관

3. 심판판의 지정

4. 심결확정 통지

5.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6. 심결예·판결예·외국의 심판에 관한 법령 기타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의 정리 및 보관

7. 심판장의 직인판수

8. 기타 심판에 관련된 사항

제13조 (抗告審判所) ①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항고심판과 이에 관한 조사·연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항고심판소를 둔다.

② 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관과 행정 2과를 둔다.

③ 항고심판소장은 판리관으로 항고심판관은 이사관·공업기감·광무기감·약무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기감·약무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행정과장은 서기판으로 보한다.

④ 행정 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류 및 물건의 수발·편찬·보존과 공시송달

2. 항고심판대장의 정리 및 보관

3. 항고심판판의 지정 및 항고심판업무에 관련된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수행인의 지정

4. 심결확정통지

5. 항고심판 서류의 방식심사

6. 심결예·판결예·외국의 심판에 관한 법령 기

타 항고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의 정리 및  
보관

#### 7. 항고심판장의 직인판수

#### 8. 기타 항고심판에 관련된 사항

**제14조** (審査官·審判官·抗告審判官의 직급) 특히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심판관·항고심판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심사관은 3급 을류 이상의 一般職 國家公務員
2. 심판관은 3급 갑류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항고심판관은 2급 을류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제15조** (委任規定)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무 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 附 則

①(施行日)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令) 특허국칙체는 이를 폐지한다.

③(經過措置) 이 영 시행 당시의 특허국은 이 영에 의한 특허청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특허청 정원 중 31인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부이사관 1. 서기관 4. 행정사무관 2. 별정직 3급 갑류상당 2. 별정직 4급 을류 상당 1. 고용원 19)은 이 영 시행 당시의 공업단지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2인(화공기정 1. 행정사무관 1)은 이 영 시행 당시의 부산사무소 소속 공무원중에서 이체받아 임용한다.

## 特許廳 公務員 定員表

總 計	277
別定職 計	6
청 장	1
차 장	1
비상계회관(3급갑류상당)	1
비서관(3급갑류상당)	1
비서관(3급을류상당)	1
비 서(4급을류상당)	1
1級 내지 4級 計	232
管理官	1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	8
이사관, 공업기감, 광무기감, 약무기감, 시설기감, 통신기감, 부이사관, 공업부기감	1
광무부기감, 약무부기감, 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 공업기감, 광무기감, 통신기감, 공	

업부기감, 광무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 1  
이사관, 공업기감, 농림기감, 수산기감, 시설기감, 부이사관, 공업부기감, 농림부기감, 수산부기감 또는 시설부기감 1  
공업기감, 광무기감, 약무기감, 시설기감, 통신기감, 공업부기감, 광무부기감, 약무부기감 5  
施設副技監 또는 通信副技監  
공업기감, 약무기감, 공업부기감 또는 약무부기감 1, 서기관 20, 서기관 또는 섭유기정 1, 기 1, 체기정 3, 전기기정 또는 통신기정 3, 섭유기정 섭유기정, 화공기정, 조선기정, 금속기정, 채광기정, 농림기정, 수산기정,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 2, 화공기정 2, 화공기정 또는 약무기정 1, 조선기정, 농림기정 또는 수산기정 1, 금속기정 또는 채광기정 1, 약무기정 1,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 1, 행정사무관 27,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관 1, 사서관 1, 기계기좌 7, 기계기좌, 전기기좌 또는 통신기좌 1, 기계기좌, 조선기좌, 농림기좌 또는 수산기좌 2, 기계기좌, 전기기좌 또는 화공기좌 1, 전기기좌 또는 통신기좌 9, 섭유기좌 4, 섭유기좌, 화공기좌 또는 약무기좌 1, 화공기좌 6, 금속기좌 또는 채광기좌 3, 금속기좌, 토목기좌 또는 건축기좌 1, 약무기좌 2, 토목기좌 또는 건축기좌 2, 행정주사 37, 사서 2, 기체기사 5, 기체기사, 농림기사 또는 수산기사 2, 전기기사 또는 통신기사 4, 섭유기사 3, 화공기사 5, 금속기사 또는 채광기사 2, 약무기사 1,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2, 행정주사보 33, 사서보 4, 기체기사보 1, 기체기사보, 농림기사보 또는 수산기사보 1, 전기기사보 또는 통신기사보 2, 섭유기사보 1, 화공기사보 2, 금속기사보 또는 채광기사보 1, 약무기사보 2, 기능직 계 9, 조무원(9등급) 2, 고용원 37.

## 特許廳人事

審 判 官	李 周 基 (審查官)
技 正	陳 今 燮 (藥務技佐)
審 査 官	任 昌 顯
行政事務官	姜 明 求
"	金 相 烈
"	朴 宇 建

(1977. 4. 25 現在)